인제서화 고령자복지주택(영구임대) 추가 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6.11.11.]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및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여
고령자용 맞춤형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 LH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11.11.(수)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고령자복지주택은 **만65세 이상인 사람(1961.11.11. 이전 출생)으로, 입주자격 해당자만 신청가능** 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청약신청	(인터넷신청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인터넷신청자)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입주자격 검증 및 부적격자 소명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26.11.30~12.4 (현장:12.1~3)	'26.12.11	'26.12.14~16		'27.4.16	'27.5.10~12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관할 사무소		신청문의 전화번호
	사무소명	주 소	
인제서화 고령자복지주택	LH 강원지역본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337	1600-1004

1. 건설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로81번길 43

※ 주택단지별 주변환경 등 자세한 사항은 **[10.유의사항]의 지구 및 단지특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공급형별	건설호수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	예비자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입주예정월
		주거전용	주거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공용	주차장						
32A	40	32.32	19.2164	17.1520	-	68.6884	**4**	15	101	벽식/개별난방	'27.5 이후

※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 건설되었으며, 세대 내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발코니는 비주거 공간으로 계약면적에서 제외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인제서화 고령자복지주택의 최조 입주 예정월은 `27.2 으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통보 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합니다.

■ 임대조건

주택형	적용구분	기본임대조건(원)				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	잔금				
32A	「가」군	**3,106,000**	155,000	2,951,000	**61,760**	(+) 6,000,000	9,106,000	31,760
						(-) 1,000,000	2,106,000	64,670
	「나」군	**13,859,000**	693,000	13,166,000	**137,830**	(+) 16,000,000	29,859,000	57,830
						(-) 9,000,000	4,859,000	164,080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제1호 **가목**(생계·의료급여수급자), **나목(국가유공자 등) 및 차목**(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해당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가능한 자**

3.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table>
<tr><th rowspan="2">청약신청
(인터넷/현장)</th><th colspan="2">인터넷 청약자</th><th rowspan="2">당첨자
발표</th><th rowspan="2">당첨자
계약체결</th></tr>
<tr><th>서류제출대상자
발표</th><th>서류제출기간</th></tr>
<tr><td rowspan="2">①인터넷(PC/모바일) 신청
'26.11.30(월) 10:00
~ 12.04(금) 16:00

※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서류제출은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②현장 신청(고령자등)
'26.12.01(화)~12.03(목)
10:30~15:3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현장접수 장소]
인제문화원(2층)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29번길 17</td><td>'26.12.11(금)
14:00 이후</td><td>'26.12.14(월) 10:00
~ 12.16(수) 16:00</td><td>'27.4.16(금)
14:00 이후</td><td>'27.5.10(월)~5.12(수)</td></tr>
<tr><td>[조회방법]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td><td>① 인터넷 제출
(전자파일 업로드)

② 등기우편 제출
(일반우편 불가)

[우편 발송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337,
LH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1층)
인제서화 공급담당자 앞</td><td>[조회방법]

①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②ARS(1661-7700)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별도게시</td><td>① 전자계약(사전 요청시)
'27.5.10(월) 10:00
~ 5.12(수) 16:00

② 현장계약
'27.5.11(화)
10:30~15:3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현장계약 장소]
추후 개별 안내 예정</td></tr>
</table>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영구↔영구)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1.11.) 현재 만 65세 이상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만족하고, 공급신청자격 순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table>
<tr><td>무주택</td><td>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12.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d></tr>
<tr><td>세대
구성원</td><td>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table>
<tr><th>세대구성원</th><th>비고</th></tr>
<tr><td>• 신청자</td><td></td></tr>
<tr><td>• 신청자의 배우자</td><td>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td></tr>
<tr><td>•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td><td rowspan="2">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tr>
<tr><td>•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tr>
<tr><td>•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td>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tr>
</table>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table>
<tr><td>외국인 배우자</td><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td></tr>
<tr><td>외국인 직계존·비속</td><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td></tr>
<tr><td>태아</td><td>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td></tr>
</table>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 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단,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td></tr>
</table>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공급 신청자격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6의4 제1호

구분	순위	내용	비고
신청 자격 **(만65세 이상)**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순위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70%(1인90%, 2인 80%)**이하인 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영구 임대 자산 기준 적용**
	3순위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인 자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차목에 해당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월평균 소득 70%(1인 90%, 2인 8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 월평균 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2.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1인가구	2,669,354원 이하	3,432,027원 이하
2인가구	3,519,762원 이하	4,693,016원 이하
3인가구	4,084,215원 이하	5,717,900원 이하
4인가구	4,401,101원 이하	6,161,541원 이하
5인가구	4,663,493원 이하	6,528,890원 이하
6인가구	4,953,132원 이하	6,934,384원 이하
7인가구	5,242,771원 이하	7,339,879원 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자산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등), 차목(일반입주자)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4,500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산정방법</th></tr>
<tr><td colspan="2">소득</td><td>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td></tr>
<tr><td rowspan="3">총
자산</td><td>부동산</td><td>•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td></tr>
<tr><td>자동차</td><td>•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td></tr>
<tr><td>금융
자산</td><td>•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td></tr>
</table>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합계금액에서 차감)**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신청자(**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5. 입주자 선정 방법

※ 공급 자격 해당 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합산 (아래 배점표 참고)	⇨	당해주택 건설지역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	추첨

■ 배점기준표

구분		배점	배점기준(신청자)
① 장기요양등급	3등급	4	공고일 현재 기준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7조제1항 3호~6호
	4등급	3	
	5등급	2	
	인지지원등급	1	
② 단독세대주 여부	단독세대주	3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세대원이 없는 사람
③ 신청자 연령	만75세 이상	3	공고일 현재 기준
	만70세 이상 ~ 만75세 미만	2	
	만65세 이상 ~만70세 미만	1	
④ 당해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	5년 이상	3	* 인제군에 연속 거주한 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2	
	1년 이상 3년 미만	1	
⑤ 사회취약계층 여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1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6. 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인증서 준비 → LH청약플러스 접속 → 청약신청 → 신청완료

① 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청약플러스 접속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③ 인터넷신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인증서 로그인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클릭	단지 및 주택형 선택	순위선택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청약신청 정보 및 배점기준 정보 작성	신청내용 확인	청약신청서 제출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청약플러스의 「**청약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일정을 확인(3.공급일정 참조)하시기 바라며, **인터넷신청 가능 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일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하신 당일 마감 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청약납입횟수,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역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시 공고일기준 해당단지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거주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당해지역 거주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4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확인방법**

- PC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발표내용에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인터넷(모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서 작성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①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어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앱다운

②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설치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있거나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www.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연습하기 → 공동인증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모바일 신청(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인증서 로그인	임대주택-인터넷 청약 클릭	단지 및 주택형 선택	순위선택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청약신청 정보 및 배점기준 정보 작성	신청내용 확인	청약신청서 제출

▪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청약을 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장방문 신청방법

▪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접수일을 포함한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현장접수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현장방문 신청장소**

- 12.1(화)~3(목) : 인제문화원 2층(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29번길 17)

7.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6.11.11.)이후 발행분에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공통 (필수)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신청서	• 관할 사무소 또는 현장신청 장소에 비치	공사 양식 각1통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대상자 : 임대주택 신청자** • **(작성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1통
해당자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1통
	신청자격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아래 참고)**	각1통
	기타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	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소득 70%(1인90%, 2인 80%) 이하인 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특수유공자 확인원, 참전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장기요양등급자	장기요양인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70%, 2인 60%)이하인 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름	-
생계·의료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생계의료수급자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內 소득인정액 산정내역)** - 사전에 생계·의료급여 등을 신청하여 결정사항 통지서를 수령해야 함	행정복지센터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제출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제출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제출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8. 인터넷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안내

■ 서류제출 방법 (① 인터넷 접수 ②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① 온라인 접수 (전자파일 업로드)	• 온라인 서류제출은 서류제출대상자가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공동인증서(개인용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또는 'LH청약플러스' 앱(App)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인터넷 서류접수 이용 시 상기에 언급한 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인증서가 기한 만료 등으로 사용 불가하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등기우편 접수	•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만(일반우편 불가)** 접수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026.12.16.)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발송주소]** (2436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337, LH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 인제서화 공급담당자 앞 - 봉투 겉면에 "인제서화 영구임대주택 서류제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PC, 모바일)

- 인터넷 서류제출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PC) 또는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앱(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한 모바일 서류접수는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는 서류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속자가 폭주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서류 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터넷 서류접수가 중단될 경우 현장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가능 파일은 서류를 스캐너로 스캔하거나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하여 생성한 파일, '정부24'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PDF파일로 저장하여 발급받은 파일(행정서류 권장방식)에 한합니다.**
 (주요 행정서류별 인터넷 발급 사이트는 LH청약플러스 안내 참조)

- **서류 스캔 또는 사진 촬영 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 미리보기 화면 캡쳐,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번에 한 장씩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촬영 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파일은 인쇄하였을 때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접수 파일형식은 6종(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모바일은 7종 허용(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 **상기 유의사항에 부적합한 서류가 접수된 경우 적합한 서류로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PC, 모바일앱) 서류제출 시 원본 서류는 제출받지 않습니다. 다만, 파일 식별불가 및 원본확인필요 등의 사유로 담당자가 서류 원본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9.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당첨자 명단 및 동호배정은 **공사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 **전자 계약 〔계약기간 : 2027.5.10.(월) 10:00 ~ 5.12.(수) 16: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전자계약을 원하는 당첨자는 우리공사 관할 사무소로 사전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절차】

<table>
<tr><td>계약금
납부</td><td>【1차 SMS】
우리공사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td><td>【2차 SMS】
계약준비
완료안내</td><td colspan="2">【PC 계약체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접속
(https://irts.molit.go.kr)</td><td>【모바일 계약체결】
"부동산 전자계약" 앱 다운로드
(Play스토어 / App스토어)</td></tr>
<tr><td>(고객)</td><td>(LH→고객)</td><td>(전자계약→고객)</td><td colspan="3">로그인 → 계약체결 → 계약서 보관/출력
(휴대폰 /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 (공인전자문서센터)</td></tr>
</table>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 「**1차 SMS**」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1차 SMS」는 청약신청 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PC 계약체결 또는 모바일 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 **현장 계약**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 〔**2027.5.11.(화)**〕**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통서류(본인 + 대리인 계약 시 모두 지참)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 또는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개인정보변경에서 변경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 순위조회)

10.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임대 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청 자격	• **이 주택의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및 계약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입주자 선정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신청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구분	유의사항
서류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주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구 및 단지여건	가. 건축 . 아파트 외벽 색채계획 및 기타 특장점 - 건물외부, 주 현관, 복도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 및 색채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내 식재 및 시설물 배치 등 세부계획은 현장여건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각종 포장 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해 저층 세대의 레벨 및 동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현장여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외관 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동별, 층별, 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전/후면에 소방 에어매트 설치구간에는 교목(키큰 나무) 식재 불가합니다. - 아파트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 개선 등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은 경로식당, 다목적강당, 프로그램실, 건강증진실 구성되어 있으며, 인제군청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계획에 따라 변경 될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비실, 펌프실/저수조, 전기실/발전기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사회복지시설과 접하는 세대는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총 22대(지상)로 계획되어 있습니다.(장애자용 1대. 전기차 충전소 1대 포함) - 아파트 내 공용부 계단실은 1개소, 승강기는 2대 설치 예정입니다. - 승강로 인접 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형태는 복도식 형태이며, 지붕의 형태는 평지붕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 색채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 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화장실은 조립식 화장실로 시공되며, 에어컨 실외기는 발코니 내부 실외기실에 설치 공간이 제공되며 창호를 통한 소음 및 열기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 복도에 면하는 창호에는 방범용 방충망이 설치 예정입니다. - 세대 내 발코니 천정은 PVC천정 이며, 바닥은 자기질 타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공용부위 벽 마감은 낙서방지페인트, 수성페인트 또는 다채무늬도료, 폴리싱타일(1층 승강기 홀 일부)로 되어있고, 천장은 수성페인트 또는 천장재로 되어있으며 바닥은 테라죠 타일, 화강석(1층 승강기 홀)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각 세대별 주거 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 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 공용면적과 당해 세대의 공용면적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 자료로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구분	유의사항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또는 변경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상 점선은 입주자 설치 품목이며, 32, 36타입 반침장 및 코너 반침 내부의 가구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샤시의 개폐 방향은 홍보물에 적용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단실에 설치되는 창은 방충망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 E/V홀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2~11층에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며, 계단실 창호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시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특히 벽걸이 TV설치시 주의 요함)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보관소는 법정 대수로 설치하는 것으로 소음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 위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도로 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기계 . 환기, 난방시스템의 내용 및 특징 - 본 단지는 LPG배관망사업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지구로서 모든 세대는 발코니에 콘덴싱 개별 가스보일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거실에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침실1,2 미설치). - 실외기실에 에어컨 드레인을 위한 바닥 배수트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에어컨 작동 시 실내로 소음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는 실내환기를 위해 1종 기계환기 시스템방식으로 전열교환기가 천정에 배관이 노출 시공되며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실외기실 내부에 에어컨 냉매 및 드레인 배관이 벽면에 노출 시공되어 있습니다. . 각종 배관류의 소음차단, 진동완화 등 설계내용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됩니다. - 단지 설계 배치상 호수별 위치에 따라 기계실, 전기실, 승강기, 펌프 환기 설비등의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되는 실외기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수거함 및 음식물 수거함 등 설치로 인해 인근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주방에는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가스차단 등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바닥배수트랩 및 드레인배관은 타입별, 층수별로 설치수량이 상이할 수 있으며 사용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 구역이므로 발코니에 설치된 보일러 및 보일러 연결배관, 수전류, 배수관, 배수트랩 등이 겨울철에는 동결 또는 동파될 수 있으니, 한파가 지속될 경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 세대 욕실은 조립식 욕실이며 비난방 입니다. - 세탁기는 발코니 설치가 기본입니다. - 세탁기 설치 시 워시(세탁기+건조기)타입 사용시 발코니 2단 선반에 간섭이 발생함에 세탁기 설치 시 가능 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분	유의사항
	- 세탁기 배면에 가스보일러가 설치됨에 따라 유지 보수 시 세탁기 이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에 설치되는 음식 조리용 열원 기구는 LPG 가스레인지만 설치가 가능합니다.(쿡탑 설치 불가) -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구입 및 반입 전 회사별 치수가 상이함에 따라 가전 기구 설치 가능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방 상·하부장은 가스배관, 자동식소화기, 배기덕트, 난방분배기 및 급수.급탕분배기 등이 설치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급수관, 소화관, 필로티 오배수관등 동결.동파가 우려되는 곳에는 동결.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발열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료등 유지관리비는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 가스 배관 및 계량기는 노출되어 지나갑니다. - 본 단지는 주방 후드가 세대별 단독 배기 방식이 아닌, 여러 세대가 하나의 공용덕트를 함께 사용하는 공용배기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옥상에 공용배기 루프팬이 설치되며, 루프팬 작동 시 최상층 세대는 일정 수준의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배기는 공용배기 시스템을 적용함에 따라 렌지후드 사용 시 덕트 내부의 전동 댐퍼 또는 정풍량 댐퍼 작동음, 공기 흐름에 따른 바람 소리, 상·하층 세대 사용에 따른 압력 변화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용덕트 구조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 본 단지의 화장실 배기팬은 직배기 방식으로 세대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팬이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기계음, 공기가 외부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풍절음 등 화장실 배기팬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코니 실외기실 천정에 배관이 노출 시공되어 있습니다. 다. 전기 . 세대내 및 공동전기시설의 내용 및 특징 - 전기수전설비는 특고압 가공 인입으로 지하 전기실에 설치됩니다. - 비상시 전원공급을 위하여 발전기(350KW) 1대 설치됩니다. - 아파트 승강기는 15인승 2대, 사회복지시설은 15인승 1대 설치됩니다. - 아파트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옥외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기 급속 1대 설치되며, 관련 법 또는 지자체 조례 개정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 보안등이 설치됩니다. . 위성시스템, CCTV 등 설치내용 및 특징 - CCTV는 지하주차장 및 각동 출입구 및 계단실, 옥외에 설치됩니다. - 단지 출입구 경비실 앞에는 차량출입 통제용 주차차단기가 설치됩니다. - 방송공동 수신설비 수신안테나는 옥탑층에 설치됩니다. - 지상주차장(필로티) 동 출입구에는 무인택배함이 설치됩니다. - 동출입구 자동문에는 공동현관기가 설치됩니다.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1등급입니다. 라. 단지계획 등 토목·조경 . 보행동선,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 단지 출입구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 야간조명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배치된 주차계획(일반형주차, 장애인주차, 경차주차, 전기충전소 등)의 경우 배치계획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계획에 따라 일반 및 장애인용 주차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 계획 여건에 따라 주차구획 위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일부 도로는 보차도 혼용블록으로 설치될 수 있으므로 차량 이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 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상위계획(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구간에 생울타리 담장이 설치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관할 소방서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소방구역의 위치,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은 최종 공사완료 및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차량출입시스템 설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 관련 이동식 피난기구(공기안전매트)가 설치되는 각 동 일부 전·후면 조경 공간에는 교목, 관목, 등의 식재가 불가능하며, 식재 제한 및 시설물 설치 불가에 따른 환경권,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계약 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수목 위치 변경 요청 불가하며, 사업추진과정 및 소방 관련 사용승인 조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의 옹벽 등 구조물 시공 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 담장, 옹벽 등은 상위계획(지구단위계획 등) 또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재질,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도, 조경,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와 연결로는 시공 단계에서 위치, 형태 등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외부여건에 따라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 결과에 따라 소방 전용도로가 추가·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조경면적 등의 단지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식재, 시설물, 포장 등 조경계획, 주변환경, 야외시설, 저층부 외관,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건축 및 토목 옹벽, 세부디자인 등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여건 및 디자인 의도에 따라 재료, 형태, 크기, 재질, 색채, 위치, 패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각동 전면, 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 세대의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개인 취향이나 민원을 통해 조경수의 추가 식재나 식재 이동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 후 설치될 예정이고 동별 이동거리가 상이하여 불편할 수 있으며, 특히 생활자원보관소는 세대 내에서 보일 수 있고 주변으로 냄새, 소음, 분진, 수거차량 통행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1층을 포함한 저층 세대는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 변경 요청은 수용이 불가합니다. - 단지 내 보행로의 위치, 규모 및 주요공간에 설치된 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모형의 조경계획 및 시설물(휴게시설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현재 단지 내 조경 설계 진행 중으로 추후 식재 및 시설물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LPG저장소가 아파트 계단실 후면에 설치되며, 가스 충전시 일부 세대에 냄새 및 소음

구분	유의사항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 단지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동·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이사 전 반드시 이사 업체의 현장 확인을 요청하여 사다리차 이용 가능 여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외 차도, 보도, 조경, 공동시설(생활자원보관소 자전거보관대 등) 등의 설치로 인해 소음발생, 사생활, 조망, 일조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 등 별도의 사생활 보호시설은 설치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관계 법령에 의거 세대 공기질 측정은 미실시합니다.(100세대 이하) - 단지 1km이내에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접경지역으로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TV설치 시 월패드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실외기실 내부에 화재 시 인접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 탈출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도시계획도로, 옹벽, 표고차 등 단지배치 특성 - 주출입구측 전면 12m 도로와 고저차가 발생합니다. - 북서측 27m 도로 방향으로 단차가 있습니다. - 북동측 민가 방향으로 단차가 있습니다. - 남동측 10m 도로 방향으로 단차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으니 상담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사회복지시설은 지자체에서 운영·관리하므로 관련 문의는 인제군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장애인·고령자 편의시설 설치 신청 대상 세대인 경우 편의증진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공급신청서 작성 시 장애인·고령자 세대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공주택특별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

구분	유의사항
	야 합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11. 주택성능등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500세대 이상 기준, 해당없음)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적용	바닥(층간바닥)	적용
외벽(직접면)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미적용
창호(직접면)	적용	LED조명	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지붕	적용	절수설비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고효율설비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12.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사업주체(등록번호)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221-82-13374)	일성건설(주) 우일건설(주) (주)기룡 서울전기(주) ㈜누리넷	-	㈜건축사사무소광장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나로이엔씨 ㈜종합건축사무소 가람건축

13.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설치가능여부
출입문	통과 유효너비 90cm이상	고령자복지주택 전체 기본 설치
	출입문옆 60cm이상 여유공간	
	레버형손잡이 등 설치	
현관	동작감시센서가 부착된 등	
	측면바닥에서 75~85cm 높이 수직.수평손잡이	
바닥	미끄럼방지용 마감재 사용	
	바닥높이차 없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1) 출입문 방풍턱 높이 : 1.5cm 이하	

	2) 현관 마루귀틀 높이 : 3cm 이하	
비상연락장치	거실, 침실, 욕실에 각각 설치	
	65세 이상 주거약자를 대상의 경우 다음 장치 모두 설치 1) 동체감지기, 그 밖에 움직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 2) 홈 네트워크망 (일정기간 움직임 없는 경우 경비실 등에 자동통보)	
욕실	1) 안전손잡이 설치(좌변기, 욕조, 세면대 및 샤워공간 주위) 2) 출입구 측 동작감시센서 부착된 등 3) 위.아래로 이동 가능한 샤워기 설치 4) 미닫이문으로 설치	
현관	마루귀틀 경사로 설치	불가
거실	세대별 시각경보기 설치	가능
	(비디오폰 높이) 바닥에서 1.2m이내 설치	
	조명밝기 600~900lx	가능(청각장애인)
부엌	좌식싱크대 설치	불가
	(취사용가스밸브높이) 바닥에서 1.2m이내 설치	
침실	조명밝기 300~400lx	가능(청각장애인)
욕실	높낮이 조절 세면기 설치	불가
	좌식 샤워시설	기설치
	수건걸이(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고령자 단독 거주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동체감지기가 설치되어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설치가능여부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불가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고령자(65세이상), 3급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기설치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이상(설치 불가능한 경우 제외)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ㅡ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불가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좌변기 옆 여유공간	휠체어 이용자 등 위하여 좌변기 옆 75cm이상 여유공간 확보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주방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고령자(65세이상), 3급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가스밸브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비디오폰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가능
	비디오폰 점자표지	비디오폰(월패드) 단축버튼 점자표지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불가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가능

	조명밝기 조정	거실 조명 밝기(600~900lux)		
침실	조명밝기 조정	침실 조명 밝기(300~400lux)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14.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삭제 <2022. 9. 6.>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척추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마.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5)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5)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또는 기면증으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한 경우로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에 백반증(白斑症)이 있는 사람
3) 노출된 안면부의 30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두 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7. 장애 정도 구분의 하한 기준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의 기준은 각각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하한 기준으로 한다.

15.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1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내역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1.11.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